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재산 형성 과정의 심사와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윤리복무국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되, 1명(6급 1명)은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의 정원 1명(6급 1명)을 재배치하여 배정하고,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단체교섭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3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3명(7급 3명)은 법제처·국가보훈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한편,

인사혁신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재정보기획관 1개 과와 기획조정관 1개 과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고, 인사채용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의 행정·기술직군 정원 1명(5급 1명)을 전문직군 공무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직무복귀”를 “재활
과 직무복귀”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장한다”를 “분장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심사에 관한 사항
14. 주식 및 부동산 신규취득제한 제도의 운영
15.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에 필요한 기준의 수립·관
리
16.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 기법의 개발·연구 및 확산
17.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허가제도의 운영

제26조제3항 후단 중 “28명”을 “29명”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전단 중 “1명(6급 1명)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
원하여야 한다”를 “1명(6급 1명)은 국세청, 1명(6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
(7급 1명)은 법제처, 1명(7급 1명)은 국가보훈처, 1명(7급 1명)은 행정중
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을 “인사혁신처”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388”을 “400”으로 하고, 일반직 계 “387”을 “39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63”을 “374”로, 전문직공무원 “9”를 “10”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91”을 “19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89”를 “18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59”를 “158”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을 “인사혁신처”로 하고, 같은 표 3) 및 4)의 평가기간란 중 “2022년 3월 31일”을 각각 “2024년 3월 31일”로 하며, 같은 표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윤리복무국 1개 과	6명	2024년 9월 30일까지
---------------	----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재해보상정책관) ① (생략)	제9조의2(재해보상정책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재해보상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②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u>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할 및 간병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총괄</u>	<u><삭 제></u>
4.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u>직무복귀</u>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총괄	4. ----- -- <u>재할과 직무복귀</u> ----- -----
5. ~ 20. (생략)	5. ~ 20. (현행과 같음)
제14조(윤리복무국) ① · ② (생략)	제14조(윤리복무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u>분장한다</u>	③ ----- <u>분장한다</u> .
1. ~ 12. (생략)	1. ~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13. <u>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심사</u> 에 관한 사항
<u><신 설></u>	14. <u>주식 및 부동산 신규취득제한 제도의 운영</u>
<u><신 설></u>	15. <u>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에 필요한 기준의 수립 · 관리</u>

<신 설>

<신 설>

제26조(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② (생 략)

③ 인사혁신처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8명을, 3급 또는 4
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
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
으로 한다.

④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금융위
원회, 1명(6급 1명)은 국세청 소
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

16.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
기법의 개발·연구 및 확산

17.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허가
제도의 운영

제26조(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29명 -----

-----.

④ -----

-- 1명(6급 1명)은 국세청, 1명
(6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7급
1명)은 법제처, 1명(7급 1명)은
국가보훈처, 1명(7급 1명)은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

<u>여야</u> 한다.	<u>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u> -- ----- <u>협의해</u> <u>야</u> --.
제29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u>인사</u> <u>혁신처와 그 소속기관</u>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 다. ② (생 략)	제29조(평가대상 조직) ① ----- ----- ----- <u>인사</u> <u>혁신처</u>----- ----- -. ② (현행과 같음)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제2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388</u>	<u>400</u>	+12
·	·	·	
·	·	·	
일반직 계	<u>387</u>	<u>399</u>	+1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63</u>	<u>374</u>	+11
전문직공무원	<u>9</u>	<u>10</u>	+1
·	·	·	

[별표 2]

인사혁신처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91</u>	<u>190</u>	-1
·	·	·	
·	·	·	
일반직 계	<u>189</u>	<u>188</u>	-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59</u>	<u>158</u>	-1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09